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1998. 7.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제안이유

현행 운용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조항이 관계법령과 상치되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함(안 제 10조).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11조).

마.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함(안 제12조).

(제25회 - 2차 산업위원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문·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방재계장이 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관리 및 지출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치·관리 및 지출된 것으로 본다.